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6

발의연월일: 2020. 7. 6.

발 의 자: 김두관·김경협·김정호

인재근 · 홍익표 · 김주영

이워택 • 윤영덕 • 문진석

진성준 • 이규민 • 송영길

소병훈 · 김진애 · 서삼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부정당업자의 경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기업의 고용환경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는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 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계약 체결 시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 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고려하도록 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하는 규정을 상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가가 선도적으로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계약의 방법) ① ~ ③ (생	제7조(계약의 방법) ① ~ ③ (현
략)	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고
	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
	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등을 고
	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u>수 있다.</u>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	자격 제한 등) ①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	
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	
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	
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2신 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용.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2 ~ ⑤ (생 략)